

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장규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장규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국가적으로 저출산·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모유수유실의 설치 권고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, 서울특별시,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- 모유수유 관련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-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, 제10조의3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3과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모유수유실의 설치·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
-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서는 “영유아”, “모유수유실”, “모유착유실”의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3조에서는 모유수유실 등 설치 권장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4조에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교육, 홍보,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6조에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함.
- 모유수유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각종 연구결과로 증명되고 있으며 아울러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시설

의 설치가 범국가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-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보와 아울러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현재의 시설설치 현황과 이용율 현황 및 그 제고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,
- 각종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.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모자보건법」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